

	<h1>가정통신문</h1> <p>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p>	2020년 6월 9일 화요일		
		담당자	교사 서 00	
		담당전화	070-7842-0762	
전북 남원시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063-631-1333(교무실) 063-631-1331(행정실)				
2020학년도 1학기 1차고사 관련 안내말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학년도 1학기 1차고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기간 : 2020. 06. 11(목)~06. 12(금), 06. 15(월)~06. 16(화)

주의사항

- 답안용 OMR 카드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코드를 바르게 기재 및 마킹합니다.
- 답안용 OMR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하며,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용 OMR 카드, 서답형, 서술형의 기재는 검정색 펜으로 하며, **연필, 샤프펜, 적색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평가과목 응시 중에는 퇴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험 종료 5분전까지 답안지 교체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사 종료시간 이 5분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답안지 교체를 허용하되 제출 답안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1.교체이전 답안지를 제출한다. 2. 교체 이후 답안지를 제출한다.)**
-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자나 사용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당일 시험을 0점 처리하고 선도 조치합니다.

지필평가 시행 중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1.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기타증상(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의 마비)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함.
2. 확진자 등으로 인해 학교가 지필고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고사를 중지하고 추후 학업성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고사 계획을 재수립함.

3. 결시자의 성적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에 결시한 학생에게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학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기준점수의 100%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진료확인서, 문자통지사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의심증상자의 경우 학생이 고사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음(대기실-전산실, 별도시험실-영어4실)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또는 기타결석(감염우려)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미응시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에 준하는 인정점을 부여함.

2020. 06. 09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

